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3. 30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3.1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 3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5.3.30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 종 웅

### 가. 제안이유

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화를 정립하여 올바른 재활용 문화조성 및 재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확하게 함(안 제2조의2)
- 2)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4조제2호~제5호)
  -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
  -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
  -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·홍보
 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
- 3) 기금운용관 조정(안 제6조제2항)
  -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복지교육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변경
- 4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, 재활용품 처리체계 변경에 따른 기금 사용용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·홍보 등을 신설하여 보다 세분화하였으며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